

의안번호	2207741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5.2.19.
추계번호	25D0169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9조의3(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제3항 신설	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여성 관련기관등 ¹⁾ 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자, 사회복지학자,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49조의3(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제4항 신설	여성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·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9조의3(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제3항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9조의3(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제4항 신설	미대상: 개정안은 여성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1)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“여성 관련 기관등”은 다음과 같고,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여성전용 숙박업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의2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
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3호의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,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

2. 상세 사유

□ 전문가 의견 조회(안 제49조의3제3항 신설)

- 개정안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여성 관련기관등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자, 사회복지학자,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 전문가 의견 조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현시점에서 법원이 여성 관련기관등에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할 대상자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 - 참고로, 현재 여성가족부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성범죄자의 ‘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’ 취업제한 시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그 횟수가 미미하여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음
 - 다만, 법원은 통상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일반전문심리위원 수당으로 1억 8,000만원,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으로 14억 8,200만원, 총 16억 6,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